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99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 구자근 • 박덕흠 • 박준태

김소희 · 김선교 · 인요한

권영세 · 고동진 · 박성민

강선영 · 김도읍 · 안철수

조지연 • 유상범 • 김성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계의 작성·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).

법률 제 호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국무총리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이"를 "국무총리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통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 ① 통 | 제5조의2(국가통계위원회) ① |
| 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 | |
| 한 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 | |
| 하여 <u>기획재정부장관</u> 소속으로 | - <u>국무총리</u> |
| 국가통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 | |
| 라 한다)를 둔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| 3 |
| 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| |
| 성하되, <u>기획재정부장관이</u> 위원 | <u>국무총리가</u> |
| 장이 된다. |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